



시행일 (22. 3.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2022. 3. 1.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발생 등 국내상황변화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I. 격리면제서 제도 개요 및 운영경과	1
II.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적용사항	3
III.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8
A.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격리면제서 발급	8
1.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8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9
3. 학술·공익적 목적	12
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3
5. 공무국외출장	14
IV. 격리면제 관리 강화	15
V. 서식(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등)	21
붙임1. 격리면제자 재택근무 안내	28
붙임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29

I. 격리면제 제도 개요 및 운영경과

1. 격리면제 제도 개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7일간 격리하는 바,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2. 격리면제 제도 운영경과

-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예외 조치로서 격리면제 제도 운영('20.4.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8.24)를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면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 근거법령: 「검역법」 제1조, 제15~17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신속통로 국가, 미국, 국장급 이상 해외출장, 직계족비속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등은 중지 예외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해외입국 국내외 기업인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21.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일반적 격리면제 기준 적용,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도 격리면제 통해 격리면제 대상 확대('21.7.1)
-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대해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선정('21.10.1~)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10일)을 반영하여 격리면제 제도 운영('21.11.4~)
-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으로 일원화('21.12.2~)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7일)을 반영하여 격리면제 제도 운영('22.2.4~)

- 오미크론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됨에 따라 오미크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된 격리면제 기준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으로 완화('22.3.1)

II.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적용 사항

1.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1) 신청

○ 목적별 신청기관

-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btsc.or.kr)」에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2) 심사

○ 목적별 심사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소관부처
- 학술·공익적목적 : 소관부처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 (심사시 확인사항)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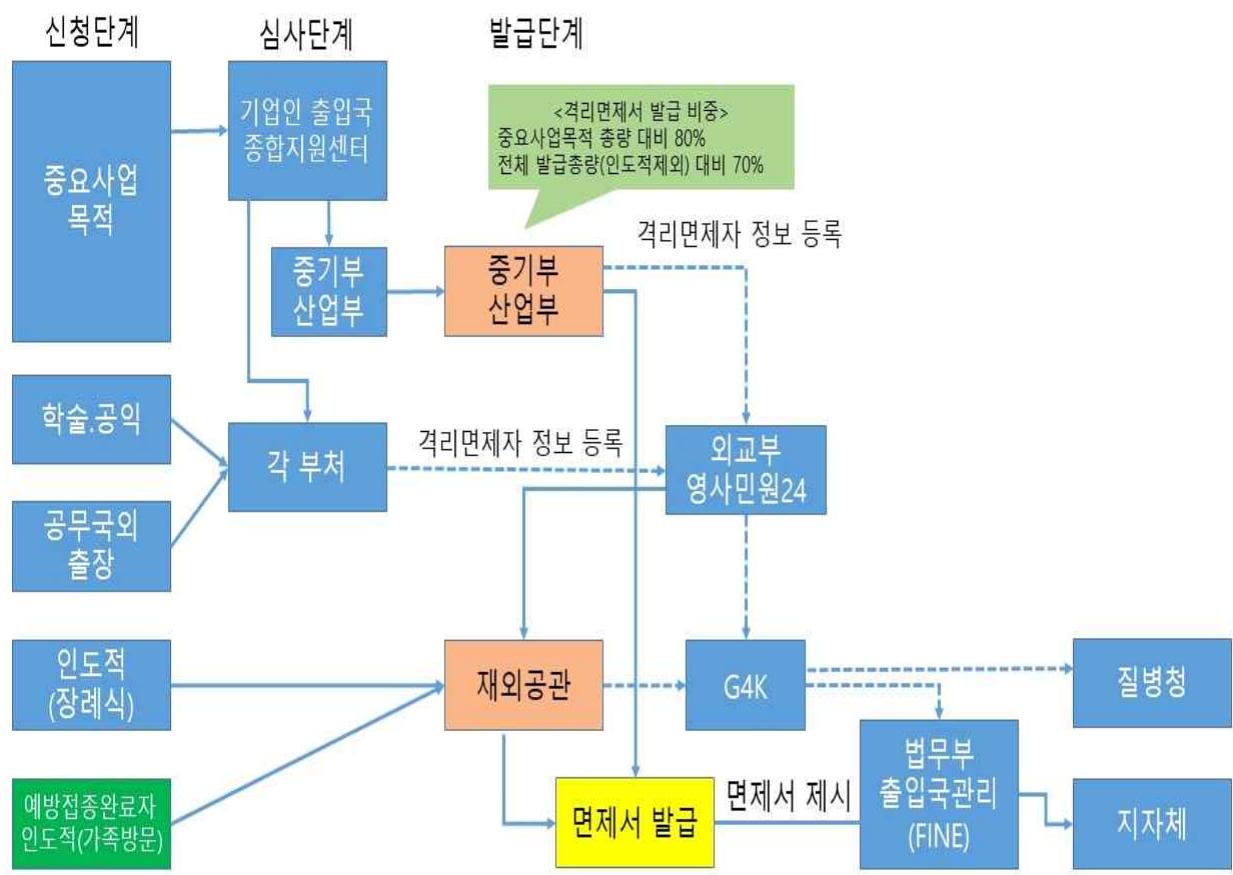
- 예방접종 유무 관련없이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21.12.2~)
- (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 여부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21.12.2~)

3) 발급

○ 목적별 발급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 학술·공익적목적 : 재외공관
- 공무국외출장 : 재외공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2.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등 세부 규정

1)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22.3.1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부터 적용

-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22.3.1일 발급 시 '22.3.14. 입국까지 효력, '22.3.15일 입국부터 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2)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 사후 발급은 불가하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3) 발급 부수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특별검역신고서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

4) 격리면제 기간

-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7일. 단, 인도적목적(직계가족방문)은 '21.12.3부터 면제서 효력중단)

* 격리면제서에 격리면제 일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일자와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7일

- 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7일까지 면제 기간 발급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시작일 전 입국한 경우, 격리면제 시작일 전까지 입국 비자 타입에 따라 시설 또는 자가격리 실시(면제 시작일 전날 24:00 까지)**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격리 의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 예시) 10.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5일까지인 경우, 10.6일 출국 또는 10.6~7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5)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재외공관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산업부, 중기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 제외)
 - * 격리면제서 상의 성명 오탈자, 입국예정일, 격리면제기간 등

6) 사증발급과의 관계

- 격리면제서 신청 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 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항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중수본-25916호. 2020.10.5.)
- *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

3. **격리면제서 소지자 방역관리(PCR 검사 종 3회 실시)**

1) 입국 전 PCR 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 * (예시) '22.1.27. 10:00 출발한 경우에는 22.1.25.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2일)

2)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 발생
-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 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
-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증상여부 매일 입력) 실시
 - * 격리면제서 발급자 중 빌열, 기침, 목이품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시 공항내 검사 가능(중수본-20406호, 2020.8.11.)

3)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

- 격리면제 기간이 7일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 격리면제자는 6~7일차 검사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함.
단, 심사부처가 없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여) 격리면제자는 제출 불필요

4.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등에 따른 조치사항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시 조치사항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아래와 같이 조치
 - ▶ 항공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제한('21.7.15.~)
 - * 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전 PCR 검사 제출 예외 허용하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는 필히 조치
 - ▶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 (외국인) 입국불허('21.1.8.~)
-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사항(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되고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해제시까지 출국 불가

III.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A)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격리면제서 발급

1.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1) 격리면제 일시 중지 조치(방역강화)

- 모든 국가를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21.12.3~)
 -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중단('21.12.3~)

2) 격리면제 일시 중지 예외조치 사항(개방성 유지)

- 강화된 격리면제 발급기준으로 일원화('21.12.2~)
 - 일반 격리면제 발급기준 적용 및 발급 일시중지('21.12.2~)
 - * 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일괄 반려처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및 발급 일시중지('21.12.2~)
 - *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일괄 반려처리
 -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21.12.2~)

2.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1)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12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중요사업상 목적에 한하며, 공익적·학술적, 인도적 목적 등은 전체 사증 가능

**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중수본-8880호, 21.3.18) 21.3.19부터 적용

○ 발급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업목적

※ 발급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

① 계약 및 약정 체결

*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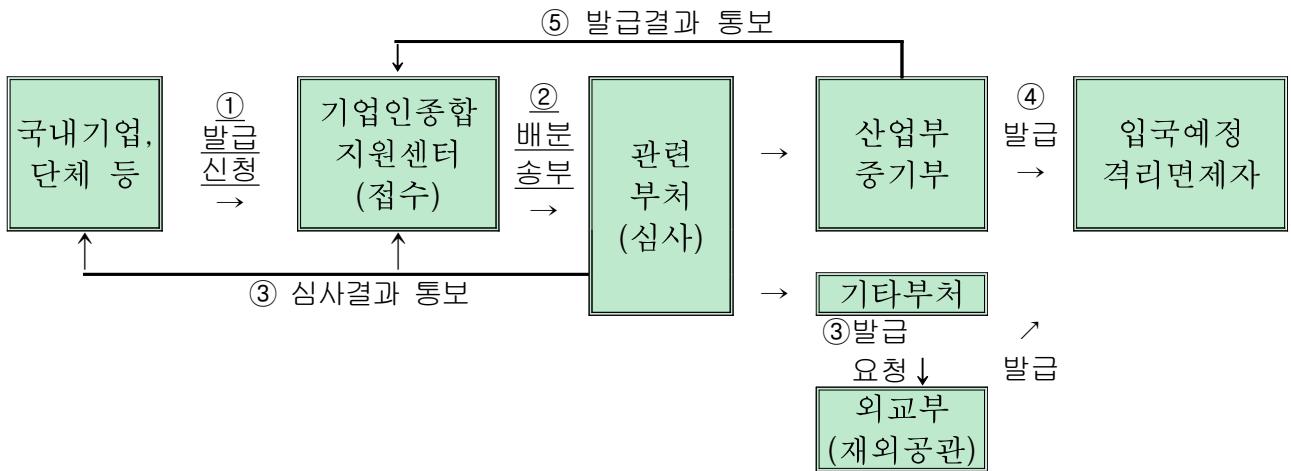
②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기술지도 및 이전 포함, 증빙서류 제출 必)

③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하여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예시) 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해 해외 출국 후 입국하는 내국인이 입국후 국내에서 계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③에 해당

※ 증빙서류 확인 : 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또는 13개 심사부처

2) 발급 절차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필수제출서류 사전검토)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송부
- 배분·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신청인에게 통보 또는 산업부가 일괄 심사
-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 후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및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하고 등록한 엑셀서식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명단 통보
- 산업부, 중기부외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하고 등록한 엑셀서식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명단 통보,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3)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4)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5) 제출서류

신청기업·단체 등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활동·방역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4)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산업부·중기부 또는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학술 · 공익적 목적

1) 발급 대상

○ 발급의 대상이 되는 공익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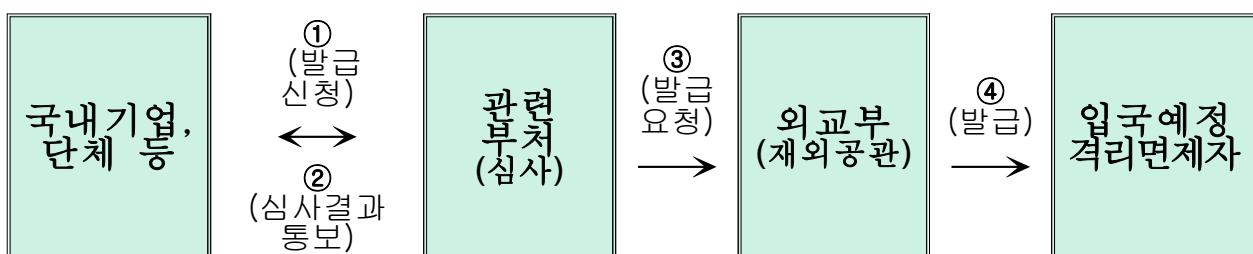
- 차관급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행사 참여인력(국민 및 외국인)*

* 국가간 기념행사 참여인력관련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안내(중수본-10447호, 21.4.1.)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 변이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심사부처에서는 격리면제서 심사시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발급

2) 발급 절차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는 지자체와 사전협의필요,

3) 제출서류

신청인 → 심사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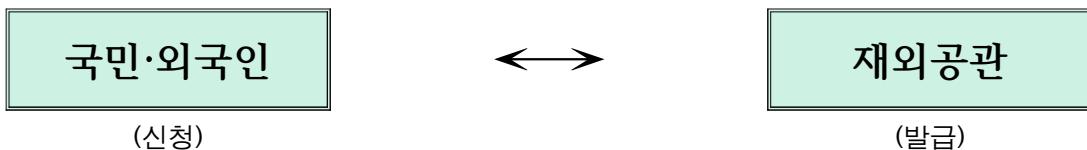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발급 대상

-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 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3)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격리면제 기간 : 최대 7일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5. 공무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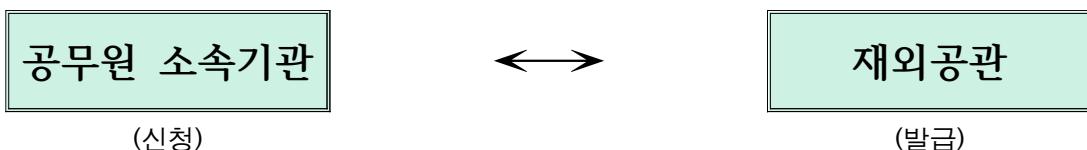
1) 발급 대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최소화)
 -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
 -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공무원인 수행인력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이상)의 수행단*

 - * 수행단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2) 발급 절차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중수본-28440호. 2020.10.29.)

3)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예외대상

4) 제출서류

(신청인 → 소관부처)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IV. 격리면제 관리 강화

1.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1) 특별입국절차 준수 : 자가진단앱 설치
- 2) 진단검사 :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
- 3) 능동감시 :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하여 건강상태 확인
- 4)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 5)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방역)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 불가)

* 공무출장 격리면제자는 작성의무 제외

6) 재택근무 권고

-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 입국 1일차 PCR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7)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2만원(일)) 될 수 있음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기획진이력으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재검출자도 효력중지, 재검출자로 분류되는 기획진 이력있는 1회 미결정 격리소지자는 면제 효력 즉시 중단 후, 격리자로 전환
- 임시생활시설 입소 후 PCR 진단 검사(24시간 간격) 3회 미결정 시 격리면제자(외교비자 소지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효력을 중단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 및 외교비자 소지자는 외교부와 협의 후 조치
- 6~7일 내 진단검사결과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진단검사결과를 심사부처 대신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2.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1) 방역대책 수립

-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2) 단체입국시 특별대책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3) 보고 및 협조 의무

- 활동·방역계획서 이행관리 철저,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관계부처 협조사항

1) 심사부처

- 격리면제자의 활동 동향, 출국 여부 등을 총괄적 관리·감독
-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대규모 행사인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 격리면제 발급 신청 심사 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및 신청서류 면밀히 확인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또는 발급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국불허, 강제퇴거 될 수 있음을 안내

*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변조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밖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등

- 격리면제 대상자 등록 및 격리면제서 발급
 - (발급기관이 산업부·중기부인 경우) 격리면제서를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및 영사민원24에 격리면제 대상자 정보 등록(서식-5 활용)
 - (발급기관이 재외공관인 경우) 심사부처에서 영사민원24에 격리면제 대상자 정보 등록(서식-5 활용) 및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서 공통사항, 효력 불인정 등 고지 철저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작성 등 적극적 업무 지원(일반사항 안내 철저)
 - *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에서 심사
- 심사부처에서는 월말 기준, 부처별 면제서 발급건수, 6~7일내 PCR 진단검사 미제출자 현황 등 작성·제출*(다음달 5일전까지)
 - * 중수본에서는 심사부처에서 제출받은 면제서 발급 등 관리현황*을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에 보고(월1회)하여 심사부처의 격리면제자 관리 강화 추진

2) 외교부

- 재외공관의 장은 격리면제서 발급 결과를 G4K(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후 전산으로 발급
 - 수기 발급의 경우에도 추후 전산에 반드시 입력
- 격리면제 기간 미기재 등* <시식-5>의 정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반려 처리 가능
 - * 서식5의 격리면제자정보 누락없이 모두 입력(사증 종류, 관련부처, 면제사유, 체류자격, 내외국인, 발급국가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시 격리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적극 안내 실시
 - * 진단검사 소요시간, 격리면제서 공통사항, 면제서 효력 불인정 사례 등

3) 법무부

- 격리면제자 정보*를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출입국·외국인청)
 - * 성명, 면제사유, 국내주소, 방문기간, 격리면제기간, 국내연착처(본인 및 지인) 등

- 외국인 입국심사 시 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활동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발급하여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고지

4) 질병 청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에는 역학적 위험성 판단*(8.24 중대본 보고)
 - * 방역강화국가 출발 또는 다수 입국의 경우

- 입국 1일차 검사 후 격리면제기간 중 검사안내

- PCR 검사(1회_6~7일차) 실시 안내
 - * 자가진단앱 푸시(push)알림, 문자 등 활용

- 검역 및 입국과정에서 격리면제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의심·확인될 경우 강제출국, 경찰고발, 시설격리 등 조치(중수본-24871. 2020.9.23.)

5) 지자체

- 격리면제 기간(7일까지) 도래 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지자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정부운영 시설에 입소가능(사전 협의 필요)

- 입국 후 7일 이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로 확인 시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 조치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문을 통해 진단 검사 미제출자 명단(활동계획 및 방역계획서 포함)을 지자체*로 통보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만 7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 격리면제대상자의 한국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자가격리자 전담부서

- 격리면제자 코로나19 화진 시에는 화진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관할 지자체에서 대응관리

- 시군구별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책임관(지자체 전담공무원)' 지정

-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해외입국 격리면제자로 확인*되는 자 중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 법무부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격리면제자 여부 확인 가능

** 격리면제서는 능동감시 기간 도과 시 파기가능

- (진단검사) 입국일로부터 1일차, 6~7일차에 PCR검사 실시*(총2회),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1일차 PCR검사 시 자가진단앱 설치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시 결과 통보 및 능동감시*로 전환
 - * 능동감시 기간 중 자가진단앱에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입력·확인(매일)
 -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및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기간 종료시점에 능동감시 종료됨을 안내
 - 각각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면제 효력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V. 서식[예방접종자 면제서 등]

〈서식-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앞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필수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는 위 항목에 체크

면 제 대 상 자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E-mail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분야			
	※ 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체육, 농림·축산·식품, 건설·교통, 수산·해운, 금융, 중소기업, 산학협력, IT·정보통신·기초과학, 보건·의료, 식품안전·의약품, 방위산업, 방송, 기타 종 택 1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주요 활동장소			
격리 면제 신청 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제출 서류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등 첨부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입국 시 7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주식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접수자	(○ ○ ○ 부 / ○ ○ 대사관 또는 부서명)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 능동감시, 방역수칙준수, 격리면제기간활동계획서 이행의무, 격리조치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 면)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 * 격리면제 전체기간(최대 7일)에 대해, 일자별 방문장소 및 대상(사업 파트너 등)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작성 불필요

상기 본인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 · 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부 장관,
주○○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7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등) 의무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았으며 향후 이를 어길 시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①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에 적합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 출장 목적의 경우 예외**)

②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받고 7일이내 PCR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 공무출장의 경우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③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기지정 또는 신규 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3.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2만원)

4.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부 장관 귀하

주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3〉 서약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자에 한함)

본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허위제출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취소되며,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제11조, 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가 위변조, 허위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4〉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1. 본인(회사 대표 ○○○)은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 ○인 (이하 격리면제자)에 국내 방역수칙에 따라 이동 및 활동범위 제한 등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준수·이행·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 (7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3.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서 및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행정 · 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일 : 년 월 일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부 장관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5> 격리면제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부(해당, 미해당)

[원본]

격리면제자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출국예정일	행사장소(장례식장 등)		

격리면제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에 대한 상세사유 적시
	첨부서류 ※ 격리면제신청서 중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면 첨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없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후 7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

※ 주의사항

-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에 적합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48시간 이내 검사)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 출장 목적의 경우 예외**)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 기준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해야 합니다.
- 면제기간이 7일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7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대로 이행(**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해야 하며,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 7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자기부담 최대12만원)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자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	------	-----------

년 월 일

○○부 장관 · 주○○대한민국 대사(총영사)관

직인

〈서식-6〉 격리면제자 정보

① 연 번	② 신 청 부 처	③ 성 명	④ 성 별	⑤ 국 적	⑥ 생 년 월 일	⑦ 여 권 번 호	⑧ 연 락 처 (본 인)	⑨ e메 일(본 인)	⑩ 체 류 자 격	⑪ 기 관 연 락 처 (조 청 기 업 , 가 족 등)	⑫ 한 국 내 주 소	⑬ 직 업 (직 장)	⑭ 조 청 기 업	⑮ 조 청 기 업 당 당 자 연 락 처	⑯ 출 발 국 가	⑰ 출 발 일	⑱ 항 공 편 명	⑲ 입 국 예 정 일	㉑ 격 리 면 제 시 작 일	㉑ 1 격 리 면 제 종 료 일	㉒ 면 제 사 유	㉓ 면 제 상 세 사 유	㉔ 발 급 일 자	㉕ 면 제 서 발 급 기 관	㉖ 발 급 국 가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총길동	남	대한민국	100-197-00-01	M1-234-456-78	010-345-678	gildong@email.com	한국	서울시종로구도봉동	(주)주나물산	(주)다라테크	미국	2020-01-12	KE12	2020-01-13	05-30	2020-01-15	2020-01-29	01-29	중요한사업상목적(계약, 투자 등)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미국		

※ 엑셀 서식 활용/ 한국내 주소 상세 기재 / 연락처는 한국내 전화번호 기재
면제사유가 ‘기타’인 경우 면제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 경우 22번 항목(격리면제사유)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입력

	변경 전	변경 후
미접종자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02 중요한 사업상 목적(교류확대 가능 국가) 03 학술 공익적 목적 04 인도적 목적 05 국외출장 공무원 06 기타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02 중요한 사업상 목적(교류확대 가능 국가) 03 학술 공익적 목적 0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05 국외출장 공무원 06 기타
해외접종완료자	-	1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중요한 사업상 목적 1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학술 공익적 목적 1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1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1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국외출장 공무원

불임 1

격리면제자 재택근무 안내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입국한 ‘격리면제자’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 기간 중 준수사항]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택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 6~7일차 검사 실시 의무**
 - 입국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입국 6~7일차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6~7일차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차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통해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을 따로 합니다.
 -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 이동장소 등을 알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불임 2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Q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배분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Q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Q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
 - 자가격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자가격리반(044-205-6512~6519), 방대본 격리관리팀(043-719-9334~5)으로 문의 바람

**Q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 가능

**Q5.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후 발급은 불가

Q6.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1일차 검사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대기가 원칙이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
-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1과-2056호(2022.1.14.)

Q7. 격리면제 기간을 결정하는 기관은?

- 사업·학술·공익적 목적은 관계부처에서, 인도적 목적은 공관에서 결정

Q8. 입국 후 교통수단 이용은 ?

- 입국 후 검사결과 ‘음성’임이 확인된 격리면제자(음성결과 문자 확인 등)의 경우 국내선항공편 등 방역교통망 외 교통체계 이용가능
-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306호(2022.1.14.)

Q9.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절차는?

- 당일 입국자 현황 및 시설 현황에 따라 공항에서 정부운영임시생활 시설 무작위 배정(서울, 경기, 인천 소재 6개소 운영중)
- 시설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송버스(경찰 선탑)로 이송
 - 이송 시 버스에서 도착 시설 및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방송 시행
- 입국 1일차 검사 및 결과 통보 시간
 - 대상자 입소 후 시설 내 의료진이 검체 채취 후 별도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진행, 결과까지 최대 1박 2일 소요(검사 결과가 미결정인 경우 시설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최대 3회 재채취 및 재검사 진행)
- 퇴소 진행 절차
 - 입국 1일차 PCR 검사 음성인 자에 한해 퇴소 진행 (입소 다음날 정오 전에 퇴소 가능)
 - 시설별 지정된 퇴소 시간에 맞춰 퇴소 진행